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6-105호

**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 [제2-1구역]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
지형도면 고시**

강서구 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 [제2-1구역] 토지등소유자(추진주체)측으로부터 가로주택
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한 사항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
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19일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나. 명 칭 : 등촌2동 모아타운 제2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강서구 등촌동 520-3 일대
- 나. 면 적 : 9,324.7㎡(정비기반시설 포함: 10,345.7㎡)

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가. 사업의 착수예정일 : 2029년 상반기
- 나. 사업의 준공예정일 : 2033년 하반기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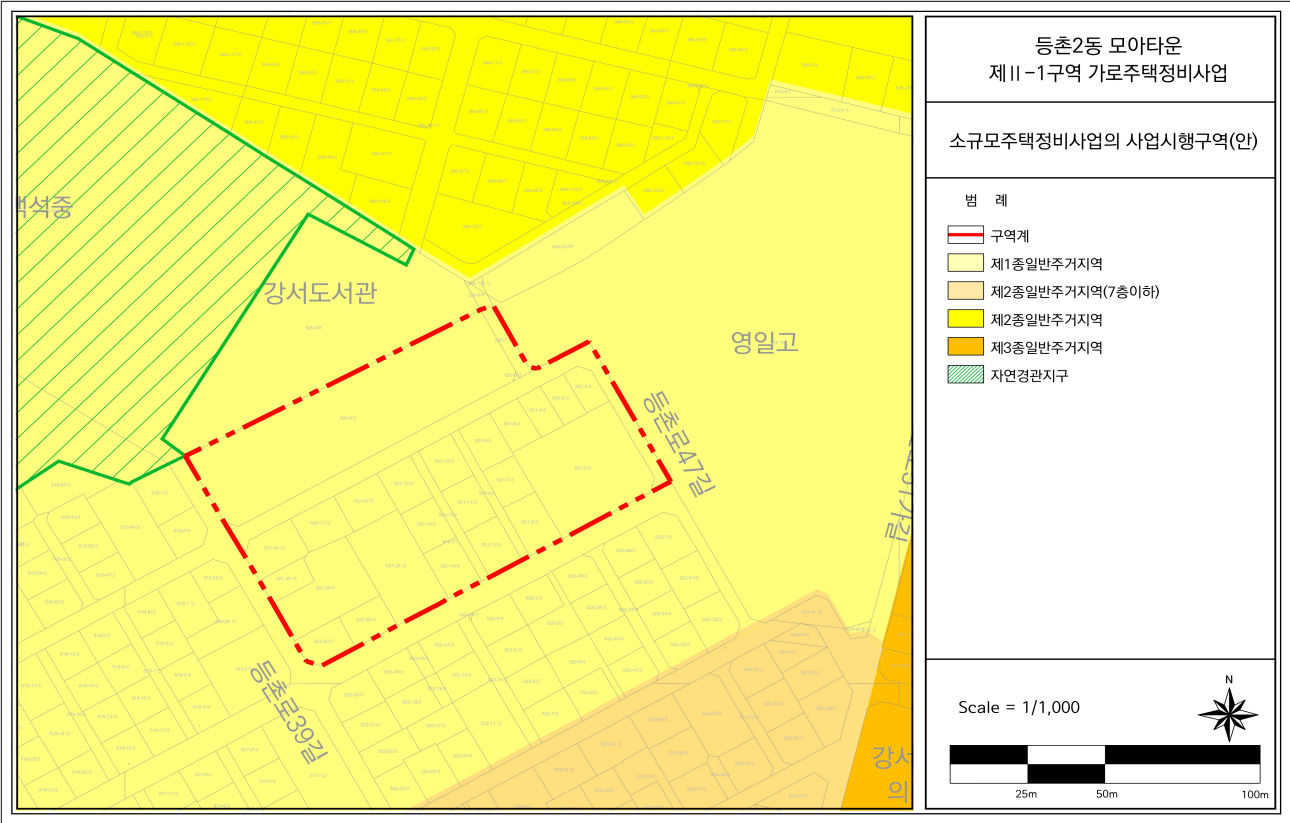
- 가. 조합의 명칭: 등촌2동 모아타운 제2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- 나.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길 18, 1층(☎02-2062-2027)

5. 조합설립 인가일: 2026. 8. 19.

6.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

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
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의 분할·합병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
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[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제23조의3(행위제한 등)]

7. 지형도면


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전략과(☎02-2600-604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